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74
----------	------

2025년 4월 25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최유희 의원 (찬성자 22명)
- 나. 제 안 일 : 2025년 3월 31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 라. 상 정 일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도농 간 상생을 도모하고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왔으나, 자치구-산지 1: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편차 등 해결을 위하여 '24. 1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으로 공급 체계를 개편하였음.
- 현재 공공급식 개편에 따른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7월 13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의 대상인 조례, 이하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본 조례는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서울시민의 먹거리 가치 실현, 직거래 방식의 공적조달체계 확립,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 기반 마련,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담보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 구체적으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방법 및 규모, 지도 감독 등(제4조부터 제8조), 공공급식위원회 설치(제9조부터 제16조),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제17조, 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본 조례는 2017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575호)로 제정·시행되어 3차례의 일부개정이 있었음.
- 본 폐지조례안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문제점¹⁾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급식 체계 개편’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서울든든급식(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식재료를 공급)’으로 공급 체계가 개편되었고, 그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친환경학교급식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의 근거법령, 목적,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공급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유통센터)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1) 본 폐지조례안 제안이유에서는 ‘자치구-산지 1: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편차’ 등을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과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와 조례에 규정된 지원 내용, 위원회 운영, 지원 시설 등의 추진 근거가 변경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졌는지 등을 포함한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공급식 체계 개편²⁾에 따라 기존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을 담당한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12개 자치구 9개 센터) 운영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로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공공급식센터 보조 등) 관련 예산은 2024년도 이후 시유재산(강동구 공공급식센터) 관리를 위한 예산만 편성(손해보험료, '24년 6,400천원, '25년 600천원) 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국에 따르면 기존 자치구 공공급식센터(9개) 가운데 서울시 소유 건물(공작물)은 강동구 공공급식센터(강동구 고덕동 소재) 1곳으로, 운영종료 후 강동구청의 요청(소속 공무원 구내식당 및 주민편의시설 사용)에 따라 현재 유상 사용허가('24.2.26.~'29.2.25.) 중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체계 :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간 1:1 협약을 통한 직거래 공급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도봉	서대문	은평	동작	중랑	송파	영등포
⇕	⇕	⇕	⇕	⇕	⇕	⇕	⇕	⇕	⇕	⇕	⇕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원주	전주	군산	강진	영광	안동	김해

- 센터현황 : 12개구 9개 공공급식센터 (동북4구는 1개 센터 운영)
- 사업내용 :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품질 및 안전관리 등
- 참여시설 : 총 1,524개(어린이집 1,495, 지역아동센터 18, 복지시설 11) ※ '23.8월 기준

2) 「공공급식 체계 개편 계획」(서울특별시장-128호, 2023.10.11.) 및 「공공급식 체계 개편 세부 추진계획」(친환경급식과-2237호, 2024.3.7.)

〈 서울튼튼급식 사업 운영 〉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지원대상) 제1항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참여현황 : 14개 자치구, 1,550개 어린이집('25.3월말 기준)
 - ※ 참여 구(14개) : 종로, 중구,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금천, 영등포, 동작, 강동, 은평, 송파, 성동
 - 중랑구의 경우 기존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공공급식 지속(~'26.6.30.)
- 공급품목 : 농산물(친환경·일반), 축산물, 수산물, 농산가공품 일부 등
- 사 업 비 : 8,67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283, 사무관리비 48, 공공운영비 336 등)

◆ 공공급식 개편내용 : 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을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운영

구 분	도농상생급식	서울튼튼급식('24. 3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급체계	· 자치구별 센터 분산 운영 - 12개 자치구(송파←은평 등), 9개 공공급식센터	· 친환경유통센터 통합 운영 - 14개 자치구, 1개 친환경유통센터
품질 및 가격	· 산지별 가격 및 품질 편차 발생	· 전국망을 활용한 동일 가격·품질

□ 추진경위

- 공공급식 개편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 '23. 10./11.
- 공공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 위·수탁(공공) 협약 : '23. 12.
- 서울튼튼급식 시범운영 : '24. 1~2.
- 서울튼튼급식 BI 개발 : '24. 2.
- 콜드체인 감시라벨 부착 사업 추진 : '24. 4.~
- 브랜드 현판 제작 및 배포 : '24. 5~
- 가공식품 및 소단량 공급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 : '24. 6~11.
- 신규 자치구 공급 개시(은평/송파(12월), 성동(1월)) : '24.12.~ / '25. 1.~
- 소량(300g, 500g) 품목 가격인상 및 품목조정 : '25.3.~

2. 공공급식센터 재산처리 현황

□ 기존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현황

○ 건립 센터(3개소)

연번	명 칭	소유자	위 치	준공일	시설규모 (면적)	지원액(집행액) ※ 전액시비	현 황
1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2018.5.1.	지상2층 (373,07㎡)	1,000백만원 (787백만원)	유상 사용허가 (→ 강동구청)
2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강북,노원,도봉,성북)	도봉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2021.8.18.	지상2층 (1,318㎡)	6,000백만원 (5,714백만원)	도봉구 타용도 활용 검토
3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중랑구	중랑구 산내동	2020.12.24	지하1층, 지상2층 (871㎡)	1,500백만원 (1,494백만원)	기존사업 지속 (~'26.6.30)

○ 임차 센터(6개소)

연번	명 칭	위 치	개소일	현황
1	금천구 공공급식센터	친환경유통센터 (강서1센터)	2017.11.01.	운영종료('23.12.31.)
2	동작구 공공급식센터		2018.12.03.	운영종료('23.12.31.)
3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		2018.09.03.	운영종료('23.12.31.)
4	은평구 공공급식센터		2018.12.03.	운영종료('24.12.31.)
5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		2019.08.19.	운영종료('23.12.31.)
6	송파구 공공급식센터	친환경유통센터 (가락센터)	2019.05.01.	운영종료('24.12.31.)

□ 기존 센터 물품 처리현황

○ 운영종료에 따라 기존 배송차량, 냉장시설, 롤테이너 등 필수장비 친환경유통센터

양여를 통한 구입비용 절감 및 매몰비용 최소화

- 총 764개 물품 양여(냉동탑차 45대*, 냉장·냉동고 31개, 롤테이너 502개 등)
- 양여한 물품은 어린이집 배송 시 지속 활용 중

*'22년 운영종료 동대문구 차량 4대 포함

○ 친환경유통센터 미양여물품 매각, 관리전환 등을 통해 쏘 물품 처분완료

- 매각 974건(매각대금 16,280,041원), 관리전환 76건, 양여(타 기관) 831건, 폐기 등 1,912건
- ※ 폐기사유: 내용연수 초과, 파손, 운비드(3회) 및 매입업체(2개) 견적을 통한 매수인 없음 등

- 본 조례에 따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대상(제4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지원내용 및 방법, 규모 등(제5조부터 제8조), 공공급식위원회(제3장), 공공급식센터의 설치·운영(제4장) 등은 ‘공공급식 개편’에 따라 현재 친환경학교급식 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구 분	도농상생 공공급식 조례	친환경학교급식 조례	비고
지원대상	어린이집 등(제4조)	어린이집 등(제4조)	
지원내용	필요한 경비지원(제5조~제7조)	필요한 경비지원(제5조~제9조)	
지도·감독	시장의 지도·감독 (제8조)	시장 등의 지도·감독(제15조)	
자문 위원회	공공급식위원회(제9조~제16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13조~제14조)	위원회 흡수·통합 ³⁾
식재료 공급체계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제17조~18조)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위탁 (제11조) *친환경유통센터	공공급식센터 운영종료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현황 (건립센터 3개소, 임차센터 6개소)

1. 강동구 공공급식센터('23.12월 종료) → 강동구청 유상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2. 동북4구(강북, 노원, 도봉, 성북) 공공급식센터('23.12월 종료) → 도봉구청 타용도 활용 검토
3. 중랑구 공공급식센터(중랑구 운영) → 기존사업 지속(~'26.6.30.)
4. 암차센터(금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송파구) → 친환경유통센터(강서센터, 가락센터) 활용

- 공공급식 개편('23.10월 계획수립, '24년 추진) 결과, 본 조례의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지원(제4조부터 제8조), 공공급식위원회(제9조부터 제16조), 공공급식센터(제17조, 제18조) 규정 등은 효력이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보이며, 관련 지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시유재산 관리비용(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손해보험료) 외 사항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평생교육국 '2024년 공공급식 세부 운영 계획 보고'(제323회 임시회, 2024.4.30.) 및 '2025 서울든든급식 운영계획'(친환경급식과-1451호, 2025.2.20.)에서 공공급식 개편에 따라 공공급식위원회를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기술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제2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23.10.19.)에서 공공급식 체계 개편에 따른 위원회 흡수·통합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

- 다만, 학교급식과 든든급식의 통합 과정에 있어서 본 조례의 폐지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급식이라는 점(급식의 품질과 안전성, 급식운영의 투명성 등), 서울시가 운영한다는 점(급식체계의 일관성·책임성, 공급업체 선정의 투명성 등), 식재료 조달이라는 특징(공급체계의 효율성·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저해·제약되는 사항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향후 사업 추진 효과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방식(공공급식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고민과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7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영철,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중화, 신동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봉준, 이종환,
채수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2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는 도농 간 상생을 도모하고 공공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해왔으나, 자치구-산지 1:1 매칭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편차 등 해결을 위하여 '24. 1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든든급식」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였음.
- 현재 공공급식 개편에 따른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재정지출) 조·항 삭제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재정수입) 각종 자료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¹⁾은 없으므로 동 폐지안에 수반되는 재정수입 순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세입감소 영향 검토 필요성] 통상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으나,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어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